

기본연구 종료과제 (2022년 5월 종료)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

1. 제출대상: 2022년 5월 기본연구 종료과제 (붙임2 과제목록 참조)
2. 제출기간: 2022.6.21.(화) 09:00 ~ 2022.6.30.(목) 18:00
 - ※ 최종보고서는 제출기간에만 제출 가능하며, 제출기간 내 주관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.
3. 제출방법: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을 통한 온라인 제출
 - ※ [붙임4] 매뉴얼 참고
4. 제출서류: [붙임3] 서식에 따라 작성
 - 최종보고서(필수)
 - 최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아닌 총 연구기간
 - 최종보고서 제출서식(붙임3)에 따라 작성 후 e-R&D 시스템에 등록
 - ※ 최종보고서 서식 내 붙임(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,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및 증빙,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) 자료까지 모두 필수 제출
 -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(선택)
 -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(배포)제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제한 요청사유서(붙임3 서식)를 작성하여 e-R&D 시스템 기타첨부파일 메뉴에 업로드(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)
5. 최종보고서 작성·제출 시 유의사항
 - 연구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성과만 인정
 - 논문 게재 시 사사(acknowledgement)가 명시되어야 함.

▶ 국문표기
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No.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).

▶ 영문표기
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No.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).

※ MSIT : Ministry of Science and ICT
※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 - 연구개시일 이후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만 인정

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을 출원/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*를 기재하여야 함.

* 연구개발과제의 명칭, 연구개발과제 번호,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(부처명)

- 제출기한 경과 후 보고서 제출은 불가하며, 최종보고서 미제출 시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
-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의식 확보를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(미이수 시 최종보고서 제출 불가)
 -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(ALPHA CAMPUS)(<http://alpha-campus.kr>)에서 제공하는 「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(이공계)」를 필수 이수 (붙임4 사이버연구교육 수강 방법 안내자료 참고)
 - ※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,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
 - ※ 참여연구자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
-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 관련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
 -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은 전문기관의 검토·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

[근거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(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)
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
 1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
 2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
 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
 - 4.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**
 5.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와의 협정·조약·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
 6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
 7.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.
 1.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3년 이내
 - 2.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년 6개월 이내**
-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**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**
-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
- 과제 종료 후 발생 성과 등록
 - 연구종료 후 5년 안에 발생한 성과는 수시로 해당 과제 성과로 등록 가능

-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향후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제공 가능
 - ※ 최종평가 제외대상 과제에 해당하며, 관련 상세 내용은 4페이지 참조
- 최종보고서 허위 제출 금지
 - 최종보고서는 허위로 작성할 수 없으며, 추후 과제 성과 및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
-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·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
 -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을 출원·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.
 - ※ 관련 근거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32조
- 개인명의 지식재산권(특허 등) 등록에 의한 위반
 - 지식재산권 성과(특허 등)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&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.
 - ※ 관련 근거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
 -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, 즉시 주관연구개발 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
 - ※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

6. 문의처

-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 관련 문의: 042-869-7744
- 사업 관련 문의: 042-869-6392, 6393, 6394, 6397

붙임

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평가 시 최종보고서 제공 안내

□ 목적

- 개인기초연구 최종평가제의 대상 개선에 따른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
- 우수연구자의 지속적 연구 지원을 위한 선정평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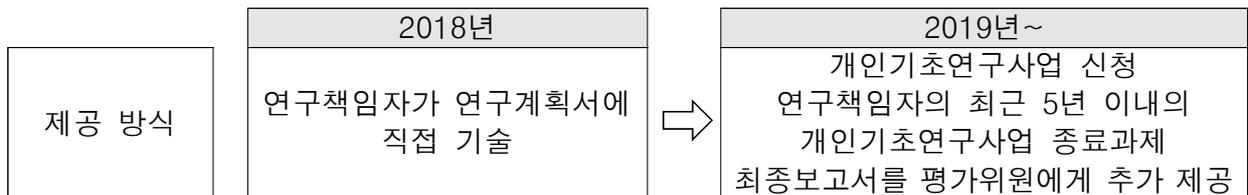
〈 개인기초연구 최종평가제의 대상 적용 개선 〉

		2018년	2019년~2020년	2021년~
우수 연구	신진연구	전체적용	좌동	좌동
	중견연구	총 연구비 3억원 이하	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	연평균 연구비 2억원 이하
생애 기본 연구	재도약연구	-	전체적용	좌동
	기본연구	-	전체적용	좌동
	생애 첫 연구	전체적용	좌동	좌동

□ 세부내역

- 연구자의 책무성과 한국형 그랜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구 책임자가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개인기초연구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공
-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이전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공

〈 선정평가 개선 〉



□ 연구재단 e-R&D 제공 화면

